

##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 - 166호

「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제5항 및 「재제조제품 품질인증요령」 제12조에 따른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기준(안)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3일

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

###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(안) 행정예고 (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경합금 휠 품질인증기준)

#### 1. 제정 취지

- 재제조 제품 품질강화를 통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
- 경제성, 친환경성이 높은 재제조 경합금 휠 제품의 일반화된 품질·성능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여 생산자, 소비자의 편익 증대

#### 2.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준 제정(안) 주요내용

번호	분야	기준번호	품질인증 기준명	제정(안) 내용
1	자동차 부품	제정	REMAN-138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경합금 휠 품질인증기준	개별 고시 제정(안) 별도첨부

#### 3. 의견제출

동 고시 제정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. 7. 2.(화)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제정고시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
1) 승용자동차용 재제조 경합금 휠 품질인증기준(안) 각 조항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
다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※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연락처

○ 주소 :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(우 27737)

○ 전화 : 043-870-5509, ○ 팩스 : 043-870-5680